

정부 및 유관기관

법령정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자율안전확인제도 시행안내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을 생산·조립·가공하거나 판매·대여 또는 사용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53종)과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96종)으로 이원화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자율안전확인 대상 제품으로 지정된 LED램프 등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출고되거나 통관하는 제품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자율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불법 전기용품에 대한 제조사, 판매자, 판매중개인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체 및 담당자들께서는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

자율안전확인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협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연락처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12, 마리오타워 310호
- 전화번호 : 02-809-8300(FAX : 02-890-8309)
- 홈페이지 : <http://www.ekesa.or.kr>

<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세부범위(제3조 관련) >

분류(군별)	품목명	분류(군별)	품목명
2.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타. 음성플레이어 파. 오디오시스템 하. 전자악기 거. 위성방송수신기 너. 비디오게임기구 더. 비디오플 러. TV영상프로젝터 며. 음질조절기 버. 오디오프로세서 서. 신호변환장치 어. 음성분배기 저. 컴퓨터 게이트 처. 전자시계 커. CCTV 카메라 티. 영상전송기 피.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허. 영상기록계 고. A/V 신호수신기 노. 영상프로세스 도. CATV 방송수신기 로.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모. 턴테이블 보. 모듈레이터 소. 그밖에 유사한 기기
6. 절연변압기	가. 고주파엘더 나. 전기용접기 가. 과일껍질깍기 나. 갑자탈피기 다. 전기정미기 라. 전기빵 자르개 마. 전기용해기 바. 애완동물 목욕기 사. 이미용기기 아. 전기 주류 숙성기 자. 전기시계 차.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카.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타. 컴퓨터 파. 전기온수매트 하. 구강청결기 거. 전기분수기 너. 투영기 더. 해충퇴치기 러. 전기집진기 며. 착유기 버. 서비스기기 서. 전기애어커튼 어. 괜코일유닛 저. 폐열회수 환기장치 처. 게임기구 커. 전동형 롤스크린 티. 전기훈증기 피. 수도동결방지기 허. 보풀 제거기 고. 산소이온발생기 노. 전기정수기 도. 초음파 세척기 로.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모. 전기작동 도어록 오. 그밖에 유사한 기기	9. 오디오·비디오 용·용기기	9. 오디오·비디오 용·용기기
7. 전기기기	가. 모니터 나. 프린터 다. 프로젝터 라. 스캐너 마. 지폐계수기 바. 전자저울 사. 금전등록기 아. 어학실습기 자. 문서세단기 차. 천공기 더. 제본기 파. 전자칠판 및 보드 하. 동전계수기 거. 전동타자기 너. 전기초자기 더. 실물화상기 러. 임체영상기 며. 그밖에 유사한 기기	10. 정보·사무기기	10. 정보·사무기기
9. 오디오·비디오 용·용기기	가. 텔레비전수상기 나. 영상모니터 다.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라. 비디오카메라 마. 튜너 바. 편집기 사. 디스크플레이어 아. 라디오수신기 자. 앱프 차. 리시버 카. 음성기록계	11. 조명기기	11. 조명기기